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20. 1. 8.(수) / 총1매(본문1)
담당 부서	주택정비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이재평, 서기관 유상철 • ☎ (044) 201-3392, 3386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재건축부담금의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은 검토하거나 결정된바 없습니다.

< 보도내용 (매일경제, '19.1.8.(수) >

- ◆ 공시가격인상 후폭풍 “재건축부담금 수억 더내야”
- 국토부, 논란 커지자 재건축부담금 제도개선 검토
 - 공동주택가격 30억을 전제하여 현실화율이 60~80%로 높아지면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최고 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

- 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있어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은 검토되거나 결정된바 없습니다.
- 헌법재판소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“합헌” 결정(19.12.27.)으로 재건축부담금 부과·징수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었습니다.
- 앞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차질 없이 환수할 계획입니다.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유상철 서기관(☎ 044-201-339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